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1. 1.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 27.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서민우 의원 등 6명(서민우, 박종길, 안영란, 배용식, 박정환, 이성순)
- 발의일자: 2021. 1. 11.
- 회부일자: 2021. 1. 15.
- 검토기간: 2021. 1. 15. ~ 1. 22.(8일간)

2. 개정이유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 반려인 및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려견 놀이터와 관리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 동물학대 금지행위 규정(안 제6조 신설)
- 맹견의 관리, 맹견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 위원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구의원 추가(안 제16조)
-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신설)
- 종전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수정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조례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영유아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1. 1. 11. ~ 2021. 1.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맹견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신설하였으며,
- 현재 장동공원 일원에 조성예정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반려인 등 모두에게 열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 주민의 의무사항인 신설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향후 법령 개정 시 제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 · 광고 · 오락 ·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 · 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른 것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4. (생략)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민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과학적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5.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1. 발의연월일: 2021. 1. 11.

2. 발의자: 서민우 의원 등 6명

(서민우, 박종길, 안영란, 배용식, 박정환, 이성순)

3. 제안이유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규정
- 반려인 및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

4. 주요내용

- 반려견 놀이터와 관리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 동물학대 금지행위 규정(안 제6조 신설)
- 맹견의 관리, 맹견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 7명에서 15명으로 조정, 구의원 추가(안 제16조)
-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신설)

5. 참고사항(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의2, 3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6. 검토의견

- 반려문화 확산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육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유기 및 학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이 필요함.
- 다만, 개정안 제6조(동물 학대행위의 금지), 제7조(맹견의 관리) 및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등)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중복 기재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권고사항
 - 개정안 제6조는 현행조례 제4조제3항 규정과도 중복됨
- 개정안 제16조 동물복지위원회 조정은 「동물보호법」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수정내용

| 조례안 | 수정(안) | 사유 |
|---|-------|--|
|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동물 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 | 삭제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에 규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중복 기재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법령 개정 시에는 조례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할 것임 |
| | | |

| | | |
|--|-----------|--|
| <p>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도박 · 광고 · 오락 ·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p> <p>5.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 | |
| <p>제7조(맹견의 관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 <p>삭제</p> | <p>「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항에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재기재 내용을 조례에 별도로</p> |

| | |
|--|---|
| <p>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p> <p>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p> <p>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p> <p>4.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p> <p>5.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 <p>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법령 개정 시에는 조례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할 것임</p> |
| <p>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영유아보육법」 제2조</p> | <p>삭제</p> <p>「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에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재기재 내용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법령 개정시에는 조례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p> |

| | | |
|---|--|-------------------------------|
| <p>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p> <p>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p> <p>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p> <p>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p> | | <p><u>있으므로</u> 삭제가 타당할 것임</p> |
| <p>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명” 을 “15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p> | <p><u>제13조제1항</u> 각 호 외의 부분 중 “7명” 을 <u>“10명”</u> 으로 한다.</p> | <p>조문 및 위원수 수정</p> |
| <p><u>제19조를</u>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p> <p><u>제1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u></p> | <p><u>제16조를</u>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p> <p><u>제1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u></p> | <p>조문 번호 수정</p> |